

<2020 지방직·서울시 9급 행정법총론 해설>

문 1. () 2020 지방직·서울시 9급

- ①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 ③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선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 ④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③

1.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선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

2014 사회복지직 9급

④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 ×) 2018 소방직 9급

3.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 2017 경쟁경제

4.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러한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 ×) 2014 국가직 9급

5.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가직 9급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을/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 ① ㉠-신뢰보호의 원칙
- ② ㉡-상대방
- ③ ㉢-법률에 의한 구속
- ④ ㉣-대외적인 구속력

1. ○ 2. ○ 3. ○ 4. × 5. ③

④

① ×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입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가 , 가 .
 가 , 가
 가 가 (2019. 7. 11, 2017 38874).

② ×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견해표명일 필요는 없으며 처분청 소속의 보조기관이 행한 조치도 선행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언동은 명시적 표시·묵시적 표시, 적극적·소극적 조치를 불문한다.

3 .
 가 1983. 4. 5. 가
 가 가
 가 3 가 1986. 7. 7. 가
 가 가 가
 가 가
 (1987. 9. 8, 87 373).

③ ×

.
 ,
 ,
 (1999. 8. 20, 99 2611).

④ ○

가 .
 ,
 ,
 가 (1990. 9. 3, 90 13).

문 2.

?) (

)

2020 지방직·서울시 9급

-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 ④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 ×) 2019 국가직 9급
- 2.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2019 서울시 9급, 2017 지방직 7급

②

- 3.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2019 서울시 9급
- 4.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 ×) 2018 국가직 7급
- 5.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 2018 서울시 9급

③

- 6.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 ×) 2019 국가직 9급
- 7.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 ×) 2018 경행경채
- 8.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 2017 국가직(하) 9급
- 9.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2013 국회직 8급

④

- 10.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019 지방직 7급
- 11.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2019 서울시 1회 7급
- 12.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청문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 ×) 2019 서울시 2회 7급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④



① ×

‘ ’

22 3
(2014. 10. 27, 2012 7745).

② ×

22 () ① _____.

1. _____

2. _____

3. 21 1 6 _____
가. 가
. .
가

② _____.

1. _____

2. 가 _____

3. _____

③ ×

(2003. 11. 28, 2003 674).

④ ○

(2004. 7. 8, 2002 8350).

문 3.

? ()

2020 지방직·서울시 9급

- ①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 ③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①

- 1.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될 수 있다. (○, ×) 2019 서울시 2회 7급
- 2. 대집행계고를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게 위반에 의해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 ×) 2019 국가직 7급
- 3.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 자체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 2018 서울시 9급

②

- 4.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2019 서울시 2회 7급
- 5.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와 대집행계고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 2017 국가직(하) 9급
- 6.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 ×) 2016 지방직 9급
- 7. 판례는 행정청이 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고 본다. (○, ×) 2016 경행경채

③

- 8.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다. (○, ×) 2017 국가직(하) 7급
- 9. 허가 없이 신축·증축한 불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다. (○, ×) 2016 국가직 7급
- 10.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 ×) 2011 사회복지직 9급

④

- 11.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 ×) 2013 서울시 9급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②

① ○

1. _____ , _____ (推論) _____ , _____

가 . , 가
 가
 (가) , (推
 論)
 2. ()
 (1996. 6. 28, 96 4374).

② ×

가 ,
 3 1 가
 가 ,
 가
 (1996. 10. 11, 96 8086).

③ ○

가
 가
 (1996. 10. 11, 96 8086).

④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행정청은 납기일을 정하여 실제에 요한 비용액에 대해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를 명하고,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2 () (.
)
 가
 가
 3
 5 () _____
 _____.

문 4.

? (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 ①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 ②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 ③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 · 징수될 수 있다.

②

- 1.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 ×) 2018 소방직 9급
- 2.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017 교육행정직 9급
-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 집행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2016 지방직 9급

③

- 4.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 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적 활용이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2018 국가직 7급
- 5.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2019 지방직·교육행정직 9급
- 6.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 하여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양자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을 갖는다. (○, ×) 2017 국가직(하) 7급

④

- 7.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 2019 서울시 1회 7급

1. × 2. ○ 3. ○ 4. ○ 5. ○ 6. ○ 7. ○

③

① ○

_____ , _____
 _____ , _____ , _____ , _____
 _____ , _____ 가 _____
 (2000. 3. 30, 98 가8).

② ○ 이행강제금(집행벌)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장래를 향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데 반해, 행정 벌은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집행벌)과 행정벌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병과될 수 있다.

() 가 _____ .
 78 가 _____ 83 1 _____
 _____ , _____
 가 13 1 _____ (2004. 2. 26, 2001
 80·84·102·103, 2002 26).

③ × 판례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_____ , _____ , _____
 _____ .
 (83 1) _____ , _____
 _____ , _____ (2004. 2. 26, 2001 80 · 84 · 102
 · 103, 2002 26) .

④ ○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처벌이 아니므로 의무의 이행이 있기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연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0 () ⑤ 가 _____ 1 2
 _____ 1 2
 _____ .

문 5.

?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②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관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②

1. 행정상 법률관계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소송절차와도 관련된다. (○, ×) 2018 교육행정직 9급

④

2.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 2019 국가직 9급

3.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공법관계이다) (○, ×) 2017 교육행정직 9급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016 지방직 9급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 2015 국가직 9급

6. 구 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 ×) 2014 지방직 7급

_____ 1. ○ 2. × 3. × 4. ○ 5. × 6. ○

④

① × 행정절차법은 공법(公法)상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사법(私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 ① , , (‘ ’)

② ×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아래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 한편,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당사자소송은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3 () 가 .

1. _____ : _____

2. _____ : _____

3. _____ : 가

4. _____ : 가

_____ , _____ 2

③ ×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라도 국고작용의 경우는 사법관계가 된다.

‘ ’ (‘ ’) .

_____ (1993. 12. 7, 91 11612).

④ ○

(「 가 」) .

70 5

가

_____ 가

_____ (1983. 12. 27, 81 366).

문 6. ?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 ①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③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①

1.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X) 2019 서울시 1회 7급
2.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X) 2017 서울시 9급
3.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X) 2015 경행특채 2차
4.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O, X) 2012 국가직 9급
5. 건축법에 의한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X) 2012 국회직 8급

②

6.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제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O, X) 2019 경행경채 2차
7. 구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O, X) 2019 국회직 8급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건축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O, X) 2019 경행경채 2차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동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O, X) 2018 국가직 7급
10.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O, X) 2017 지방직(하) 9급

③

11.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O, X) 2017 국가직 9급
12.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그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O, X) 2015 국회직 8급, 2010 지방직 7급

④

13.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O, X) 2016 국가직 9급
1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O, X) 2016 지방직 9급

15.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 2015 지방직 9급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①

① ×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이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9 (14) 가
(1996. 12. 30, 5230) 9 1 가
가
..... (1999. 10. 22, 98 18435)

2. 가
가 가 가
가
가 (2010. 11. 18, 2008 167).

② ○

1. 14 2 가
가
가 가 가
가 (2011. 1. 20, 2010 14954).

③ ○

40 () ① 가
가
가
② 1 가 가 가
가
1.
2. 가
3. 가

④ ○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가

() 가

가 (2009. 4. 23, 2008 6829).

문 7.

? ()

2020 지방직·서울시 9급

- ㄱ.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ㄴ.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 ㄷ.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 ㄹ.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①

-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2017 지방직(하) 9급
-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 ×) 2016 교육행정직 9급
- 3.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2014 국가직 9급
- 4.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 2014 지방직 9급

②

- 5.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 ×) 2019 서울시 2회 7급, 2016 국회직 8급
- 6.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 가능하다. (○, ×) 2018 서울시 9급

③

- 7.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 2019 지방직·교육행정직 9급, 2017 사회복지직 9급
- 8. 행정각부의 장관이 정한 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한 것으로 법령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형식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2017 국회직 8급
- 9.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이때 고시 등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 2017 서울시 7급
- 10.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 2015 지방직 9급

④

- 1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 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닌다. (○, ×) 2019 사회복지직 9급
- 12.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의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 2017 서울시 7급
- 13.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부령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 (○, ×) 2016 국회직 8급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④

ㄱ. × 판례는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영업허가의 취소, 정지, 과징금 부과기준)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53 1 [16] ,

(1997. 5. 30, 96 5773).

ㄴ. ×

가

(2006. 4. 28, 2003 715).

ㄷ. × 판례는 상위법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형식을 정해서 위임하였음에도 수임기관이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

가

가

가 (2012. 7. 5, 2010 72076).

르. x

가 가

(2013. 9. 12, 2011 10584).

문 8.

?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 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 ×) 2019 국가직 9급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행위에 속한다. (○, ×) 2019 사회복지직 9급

4.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그 대상인 기본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도 그에 대한 인가를 하면 그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 2012 국가직 9급

ㄴ.

- 5.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는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 2019 국가직 9급
- 6.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강학상 특허이다) (○, ×) 2017 사회복지직 9급
- 7.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 2016 지방직 9급
- 8.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인가에 해당한다. (○, ×) 2016 국회직 8급

ㄷ.

- 9. 강학상 인가에 있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 2019 경행경채 2차
- 10.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 2017 국가직 7급
- 11.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 수 있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 ×) 2015 국가직 9급
- 12.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행위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 ×) 2015 국회직 8급

ㄹ.

- 13.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 2019 국가직 9급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이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 ×) 2019 지방직 7급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판례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 2018 서울시 9급
- 16.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 2016 국가직 7급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는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판례에 따를 때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 2015 서울시 9급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①

ㄱ. ○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를 받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 역시 무효로 된다. 즉,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다. 한편, 기본행위가 일단 유효하고 이에 대해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기본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기본행위가 나중에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인가도 실효된다.

1. _____ .
 2. _____ 가 _____ 가 _____ (1987. 8. 18, 86 152).

ㄴ. ○

(_____) _____ 가 _____ 가 _____ .
 (45·46) _____ ‘가’ _____ 가 _____ ,
 _____ 가
 (1996. 5. 16, 95 4810) .

ㄷ. × 인가의 보충성에 비추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_____ 가 _____ 가
 (1996. 5. 16, 95 4810) .

ㄹ. × 관할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강화상 인가에 해당한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관할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기 전이라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해야 하며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는 이후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_____ 가 _____
 (2012. 8. 30, 2010 24951).
 2-1. 「 _____ 」
 _____ .
 2-2. _____ 48 _____
 _____ 가·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2009. 9. 17, 2007 2428) .

문 10. _____ ? (_____)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 ①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재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①②

1.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를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 2015 서울시 9급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2018 서울시 9급
3. 취소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 2018 국가직 7급
4.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 2017 서울시 9급

③

5. (판례에 따르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 2008 국가직 7급

④

6.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 ×) 2019 서울시 9급
7.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에게 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甲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허가를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 ×) 2019 국가직 7급
8.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 ×) 2018 서울시 9급, 2016 교육행정직 9급

1. ○ 2. ○ 3. × 4. ○ 5. × 6. ○ 7. ○ 8. ○

③

①② ×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담만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타 부관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부담을 제외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1. (①). 가

가 가 ,

(1992. 1. 21, 91 1264).

2. (2 가 가 40

가 20) . 가 가

(②)(2001. 6. 15, 99 509).

③ ○

문 12.

? ()

2020 지방직·서울시 9급

- ①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①

1.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처분의 당·부당의 문제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 2018 경행경채 3차
2. 행정심판법상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 (○, ×) 2012 지방직 7급

②

3.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 ×) 2019 국가직 9급

③

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있다. (○, ×) 2010 지방직 9급

④

5.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 2017 국회직 8급
6. 판례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인정한다. (○, ×) 2012 지방직 7급

1. ○ 2. ○ 3. ○ 4. × 5. × 6. ○

④



①② ○ 행정심판에서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5 ()

1. _____ : _____ (①)
2. _____ : _____
3. _____ : _____ (②)

- ③ ○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부작위에 대한 강력한 구제수단인 의무이행심판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에서 의무이행심판과 별도로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④ × 종래 명문규정이 없어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청구가 허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다수설과 판례는

인정함), 2017년 4월 개정 행정심판법에서 명문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인정(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참조)하고 있다.

49 () ② _____
 _____ . < 2017. 4. 18.>

문 13.

. ㉠~㉣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부터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을 (㉢)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①	있을 날	30일	결정서의 정본	통지받은 날	180일
②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
③	있을 날	1년	결정서의 부분	통지받은 날	2년
④	있음을 안 날	1년	재결서의 부분	송달받은 날	3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19 소방직 9급
- 처분이 있음을 알고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처분이 있는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2015 교육행정직 9급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된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 ×) 2018 지방직 7급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 ×) 2013 경향특채

1. ○ 2. × 3. × 4. ×

②

②

20 () ① _____ (㉠) 90 (㉡) _____
 , 18 1
 _____ 가 _____ (㉢) _____ (㉣)

 ② _____ 1 (㉡)(1 _____ 1)
 _____ . , 가 _____ .

문 14.

?(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 ③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 1.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더라도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 (○, ×) 2019 경행경채 2차
-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2019 사회복지직 9급
- 3.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 2018 경행경채

②

- 4.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 ×) 2018 서울시 1회 7급
- 5.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 2014 국가직 9급
- 6. 도시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 ×) 2014 국회직 8급
- 7. 장기성 ·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계획확정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 ×) 2008 지방직 7급

③

- 8. 일정한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 2019 서울시 1회 7급
- 9. (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 乙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乙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통보를 하였다) 甲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甲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 ×) 2018 국가직 7급
- 10.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 · 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계획의 특성상 그 변경을 신청할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 2014 국회직 8급

④

- 11.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2018 지방직 7급
- 12.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 ×) 2016 사회복지직 9급
- 13.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 2016 경행경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④



① ○

「
가
(2015. 3. 26, 2014 42742).

② ○

(「
(1994. 1. 28, 93 22029).

③ ○

[가 가
()'
가
가 가
(2003. 9. 23, 2001 10936).

④ ×

.
(2004. 4. 27, 2003 8821).

문 15. ?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 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③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①

1.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 2019 국가직 7급
2.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 2019 서울시 2회 7급
3.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 ×) 2018 국가직 7급

②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 (○, ×) 2018 국회직 8급
5.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 ×) 2010 지방직 9급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 ×) 2008 국가직 7급

③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식별정보에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 2013 국회직 8급

④

8. 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검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사유가 된다. (○, ×) 2019 국가직 7급

문 16.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 ㄱ.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 ㄴ.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ㄷ.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행위
- ㄹ.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행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가.

1.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2019 소방직 9급
2.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2018·2016 국회직 8급
3.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2016 국가직 9급

나.

4.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 2019 서울시 9급
5.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이다. (○, ×) 2019 서울시 2회 7급
6.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2019 국회직 8급
7.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2016 국가직 9급

다.

8. 지방경찰청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다. (○, ×) 2019 소방직 9급
9.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017 사회복지직 9급
10.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 ×) 2016 서울시 9급
11.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 2015 서울시 9급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②

문 17. 가 ? () 2020 지방직·서울시 9급

-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③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 ④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67. 3. 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①

1.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에는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 2018 서울시 9급
2.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2017 사회복지직 9급
3.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 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 2017 국가직(하) 7급
4. 국가배상의 요건 중 법령위반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 ×) 2017 서울시 7급
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위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 ×) 2016 교육행정직 9급

②

6.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체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 2019 서울시 2회 7급
7.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한 법령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2019 서울시 1회 7급
8.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 ×) 2019 국회직 8급
9.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 2019 국가직 7급

③

10. 국가배상법상 배상신청인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2006 국가직 7급
11.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 2008 중앙선관위 9급

④

12.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 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 2008 국가직 7급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③

① ○

가 , 가
(2008. 6. 12, 2007 64365).

② ○

가 , 가
(1993. 2. 12, 91 43466).

③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배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상결정에 동의하거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가 15 () ①
가
③ 가
가 .
가 (1981. 2. 10, 80 317).

④ ○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가 3
가 (1967. 3. 3, 1899) 3 1·3
가 3
(1970. 3. 10, 69 1772).

문 18.

?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③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 ④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④

1.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의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에 개별적 법률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 ×)

2009 지방직 7급

1. ○

③

① ○

22 ()

② ○

15 (22)
가 ()
1995. 4. 20, 92 264).

③ ×

「 」
「 」 17 3
(2009. 5. 28, 2007 134).

④ ○

가 「 」
15 (22)

「
」 가 .
9 2 2 () .
(2006. 10. 12, 2006 38).

문 19.

? ()

2020 지방직·서울시 9급

- ①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④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①

- 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 2017 지방직(하) 9급
- 2.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란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된다. (○, ×) 2017 사회복지직 9급

③

- 3.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2019 서울시 9급
- 4. 대법원은 종래 무효확인소송에서 요구해 왔던 보충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태도를 변경하였다. (○, ×) 2018 교육행정직 9급
- 5.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 ×) 2017 국회직 8급
- 6.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2016 지방직 9급

7. 무효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2015 교육행정직 9급

④

8.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 ×) 2019 지방직·교육행정직 9급

9.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과세처분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 ×) 2017 국가직(하) 9급

1. ○ 2. × 3. ○ 4. ○ 5. ○ 6. ○ 7. × 8. ○ 9. ○

②

① ○

(가 , 가) 가 가 가 (2007. 6. 14, 2004 619). < > 가 가 가 가 (2006. 4. 28, 2005 14851).

② ×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에게 유리한 행위는 1인이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반면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지문에서 참가인이 상소를 했다고 한 것은 재판에서 각하나 기각판결 등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뜻인데,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하게 되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참가인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가 가가 16 가 3 가 , 가 가 78 가 가 78 가 67 1 , “ 가 .” , 가 가 가 , 가 가 (2017. 10. 12, 2015 36836).

	16 (3 가) ①		3 가
	3		가 .
②	1		3
③	1	3	.
④	1	가 3	67 .
	67 () ①		가 .

③ ○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실질적으로 권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다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 ’ .
2.	35 ‘ ’ 가 (2008. 3. 20, 2007 6342).

④ ○

3 2 , 39	가 .	가	가
(2000. 9. 8, 99 2765).			

문 20.

? ()

2020 지방직 · 서울시 9급

<p>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p> <p>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p> <p>ㄷ.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없다.</p> <p>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 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p>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p>ㄱ.</p> <p>1.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2019 국회직 8급</p> <p>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2019 서울시 2회 7급</p>

-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2019 지방직·교육행정직 9급, 2018 서울시 2회 7급
-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2015 서울시 9급, 2015 경행특채 2차
-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2015 경행특채 2차

ㄴ.

- 6.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2019 국회직 8급
- 7.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 ×)
2018 소방직 9급
- 8.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2018 서울시 2회 7급
- 9.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 2018 경행경채
- 10.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2017 국가직 9급

ㄷ.

- 11. 전형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 ×)
2014 국회직 8급
- 12. 변형된 과징금은 인·허가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여 그 인·허가사업을 취소·정지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되, 이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이다. (○, ×)
2014 국회직 8급
-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2013 국가직 9급

37 ㉠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을(를)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 ① 과태료
- ② 과징금
- ③ 가산금
- ④ 이행강제금

ㄹ.

- 1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는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2019 지방직·교육행정직 9급, 2018 서울시 2회 7급

